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5. 15.(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23-095)**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결주문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도 방통위의 처리제한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의 가입 범위와 기준, 불법 촬영물 처리제한명령 요청권자 확대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도 2월 13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2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되, 다만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5,0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면제해 줌으로써 면제 기준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년도 3월 13일 동 사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4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규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4> 주요 개정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촉진 및 지원 관련 사안은 개정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관련 단체에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서, 이행 실적 및 활동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및 그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동의획득방법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는 한편,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범위 및 기준입니다. 보험(공제) 가입 등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가입대상으로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다만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은 기본방향은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으며, '형평성' 및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저가입금액을 차등 설정하였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이용자수 및 매출액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분류하고, 이들 분류 기준을 조합하여 최저가입금액을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자수 구간은 역시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1,000명~10만명 미만, 10만명~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으로 구간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매트릭스 매출액 구간을 나누었으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준비금 적립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는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정대리인 관련해서 과태료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위치정보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물 처리제한명령 요청권자 확대입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장이 방통위에 처리제한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방통위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우선 자율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동의확인방법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체화하였

으며,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5,000만원 미만의 매출액 발생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불법촬영물 처리 제한명령 요청권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안들이 기존 위원회 보고 후 변경된 주요 사안입니다. 향후 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5월~6월에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보고를 들으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관련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많았던 손해배상 책임보험 준비금 최저액 산정기준 설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타당한 의견을 수용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힐 만하다고 봅니다. 지난 2월에 이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보고할 때도 지적했듯이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ICT 사업의 특성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대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개발사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일평균 이용자 1,000명 미만 및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기업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적용을 면제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규제 수용도를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결코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할 사무처의 과제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을 책임보험 면제기준으로 잡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것과 함께 2017년도의 소상공인 매출액 중간값 평균이 7,00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5,0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5,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 중간 정도 수준으로?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위원회 보고 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사안들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활동지원과 자율규제, 불법촬영물 처리제한명령 요청권자를 수사기관의 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 그리고 위치정보법 시행령의 동의확인방법 구체화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에 대해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확인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세 미만의 아동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 부모님 정도 되겠지요. 동의를 받는 방법 중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개 아동들 중 친구 꼬임에 건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유해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개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그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존 수단 외에 추가해서 늘어났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어떤 부분을 더 추가했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문자메시지 발송, 휴대전화·아이핀 등 본인확인, 신용카드 유효성 확인 등의 방법 외에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동의획득방법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여부가 표시되도록 휴대전화 메시지들 문자나 앱push알림, 신용카드 등을 통해 그런 것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면서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혹시 동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하를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은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촬영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의 장이 음란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없었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장, 예를 들면 경찰이 우리에게 음란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바뀐 것이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도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처음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로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지요?

○ **최성호 이용자정책구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해 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범위 및 기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자들,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에는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용자보호라는 가치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특히 담당과에서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리 제한명령 요청을 수사기관의 장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실무선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 개정을 할 때는 그 취지에 대해 이용자들이 알고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규제의 속성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접속차단,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순식간에 확산되어서 불법영상촬영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 제한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브리핑할 때 언론과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구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9-23-096~100)**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포르쉐코리아(주), (주)큐알온텍, (주)헨디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허가신청 공고·접수가 있었으며, 포르쉐코리아(주), (주)플라잉, (주)큐알온텍, (주)헨디카, (주)이즈피엠펜피 등 총 5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정상으로 특이사항 없었으며, 저희가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8일 양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포르쉐코리아(주), (주)큐알온텍, (주)헨디카 등 총 3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주)플라잉, (주)이즈피엠펜피는 총점 70점 미만으로 부적격 판단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번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사업자 심사에서는 탈락자가 2개사가 나왔습니다. 사무처가 충실히 심사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탈락된 (주)플라잉은 전동 키보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심사결과는 키보드의 관리계획 및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점과 규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인 법령 이해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주)이즈피엠펜피도 미성년자의 위치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보호 방안이 결여되었고,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가 어렵다고 본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허가 받은 3개 사업자들은 위치정보보호와 더불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블랙박스에 녹화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영상과 차량 운행 정보 등을 통해 렌터카의 사고 규명 비용을 줄이려는 계획이나 자동차 엔진정보를 진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통해 실시간 차량관제와 주차 및 보험서비스 등의 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커넥티드카 사업과의 연계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들이 잘 정착될 경우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행정의 규제이면서도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을 구체화하는 신사업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라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혹시 여기에 렌터카 차량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주)큐알온텍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주)큐알온텍은 적격으로 심사를 받았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렌터카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면 고교생이 자기 아버지 부모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차를 빌려서 고교생 2명이 시속 180km로 주행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수십 킬로미터를 불법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험천만한 일인데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쉽게 부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렌터카를 빌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할 때 반영되는 심사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심사점수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14세 미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 대한 안전장치가 눈에 별로 띄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 심사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말씀하신 사안은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우선 그런 사안들은 경찰 쪽 사법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렌터카 업체들의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사고가 나는 것들은 중소영세형 렌터카에서 수익을 너무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 추적에 대한 영역을 보는 것이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영역을 직접 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추후 말씀하신 사안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고민하느냐 하면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성이 직접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쉽지 않겠지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즈피엠피가 어떤 업체였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어린이 대공원 방문객의 비콘(Beacon) 서비스였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여기도 보면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보호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적격 심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또 ㈜플라잉이라고 전동 킥보드 대여·반납 공유 서비스인데, 여기도 보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점에 점수가 하나도 충족되는 점수 없이 전부 미달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잘해 준 것 같습니다. 부적격으로 허가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와 렌터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 심사기준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허가 결과를 낼 때 허가조건의 부대로 권고 의견으로 내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더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급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허가를 내도록 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특히 개인위치정보는 보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산업 활성화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기 방통위부터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IoT,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보면 개인 또는 사물위치정보 사업은 5G 시대의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창조경제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혁신경제,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3기

때도 우리가 상당히 야심차게 위치정보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을 세웠는데 솔직히 지금 그때 세웠던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제3기 때 우리가 세웠던 정책방향들의 달성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우려하신 사항이 제기될 것 같아서 이미 지난달부터 위치정보사업 관련해서 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반을 돌려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리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불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규제 완화를 하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뒷단에서 처벌이나 과태료 조항을 균형 있게 올리고, 사업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게 하는데 대신 진입된 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미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 저희가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급적이면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허가외의 경우 허가 사업자가 몇 개 정도 나가 있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신고 사업자는 210여개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허가도 있고 신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구슬은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꿰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용자 개개인의 위치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보호 못지 않게 활용이라는 다른 한 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잘 고민해서 예쁜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구장**

-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입규제도 완화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공모전, 좋은 사업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공모해서 활성화시키거나 또 컨설팅하는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앞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그렇고,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도 그렇고 저희가 규제기관으로서 규제를 하되, 그 규제가 사업에 방해가 되면 또는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현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에 관한 원칙은 먼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네거티브 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으로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하다 보면 또 지나치게 조건이 많이 붙어서 진입 규제가 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잘 조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진입은 쉽게 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처벌을 통해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렵거나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맞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실무 하시는 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5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2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1분 폐회 】